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6.12.3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6.29입니다.(무주택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자격 조건 판단기준일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주택건설지역인 서울특별시는 물론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까지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단,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신청자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신청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단, 본 아파트는 85㎡초과 주택으로 100% 추첨제로 선정함) ※ 본 아파트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으로 1순위 자격 제한(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포함) :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 불가함.(2순위로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및 과거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자 및 세대에 속한자(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 : 규칙제3조제2항 각호(제3호, 제5호, 제7호 및 제9호는 제외한다)의 주택,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에 따른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 ※ 재당첨 제한기간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5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3년 /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85㎡이하 – 당첨일로부터 3년, 85㎡초과 – 당첨일로부터 1년 ※ 청약 조정대상지역 : 서울시 · 경기도 과천시 · 성남시 – 모든주택 / 하남시 · 고양시 · 남양주시 · 화성시(동탄2에 한함) – 공공택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연제구 · 동래구 · 남구 · 수영구 – 민간택지 /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 공공택지 ※ 과거 당첨사실 조회 방법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따라 금융결제원 주택 청약서비스(www.apt2you.com) 또는 KB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신청자, 배우자 및 세대원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 제한기간 강화 : 당첨일로부터 3개월 → 당첨일로부터 1년 연장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기간 – 서울시 용산구는 과밀억제권역이며, 본 아파트는 수도권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최초로 주택공급 계약체결이 가능한 날부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전매제한기간 조정지역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며,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나 청약 신청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에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특별 · 일반공급)시 최하층을 희망하는 때에는 우선배정하오니 청약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고령자세대 및 장애인세대의 신청자가 3명 이상 미성년자녀의 세대보다 우선합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본 아파트는 최저층이 5층인 주택형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 후 청약신청 하시기 바람)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본아파트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오니, 아래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당사자는 6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 외 자세한 사항은 2016.12.3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도시계획과 7449호(2017.6.29)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 63–70번지 일대(국제빌딩주변 제4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43층 5개동, 총 1,140세대(조합원분 259세대, 임대주택 194세대 포함) 중 일반공급 68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69세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21세대 포함]

■ 공급대상 (단위 : ㎡)

구분	공동주택 주택관리번호 및 아파트코드	주택형 (주거전용면적)	공급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계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특별공급 다자녀 당해	다자녀 기타	노부모	계	일반 공급	저층우선 배정세대
민영주택	2017000822–01	92.7398A	17	92.7398	37.7314	130.4712	77.1224	207.5936	17.3081	1	1	1	3	14	–
	2017000822–02	92.9164B	18	92.9164	35.8587	128.7751	77.2693	206.0444	17.1789	1	1	1	3	15	–
	2017000822–03	92.1705C	22	92.1705	35.8372	128.0077	76.6490	204.6567	17.0632	1	1	1	3	19	–
	2017000822–04	102.8617	238	102.8617	39.5262	142.3879	85.5398	227.9277	19.0034	12	12	7	31	207	8
	2017000822–05	114.8905A	178	114.8905	45.5194	160.4099	95.5430	255.9529	21.3400	9	9	5	23	155	6
	2017000822–06	114.5011B	193	114.5011	44.2888	158.7899	95.2191	254.0090	21.1779	10	9	5	24	169	8
	2017000822–07	135.3849	21	135.3849	53.1162	188.5011	112.5860	301.0871	25.1031	1	1	1	3	18	2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천원, VAT 포함)

주택형	동	호	공급 세대수	층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금 1차 계약시	계약금 2차 계약후 1개월내	중도금 1회(10%) 2017.11.15	2회(10%) 2018.4.16	3회(10%) 2018.9.14	4회(10%) 2019.2.15	5회(10%) 2019.8.15	6회(10%) 2020.2.14	잔금(30%) 입주지정일
92.7398A	105동	3호	2	20~21	853,600	698,400	1,552,000	40,000	115,200	155,200	155,200	155,200	155,200	155,200	155,200	465,600
			3	22~24	862,400	705,600	1,568,000	40,000	116,800	156,800	156,800	156,800	156,800	156,800	156,800	470,400
			3	25~27	870,650	712,350	1,583,000	40,000	118,300	158,300	158,300	158,300	158,300	158,300	158,300	474,900
			1	28	887,700	726,300	1,614,000	40,000	121,400	161,400	161,400	161,400	161,400	161,400	161,400	484,200
		4호	2	20~21	853,600	698,400	1,552,000	40,000	115,200	155,200	155,200	155,200	155,200	155,200	155,200	465,600
			3	22~24	862,400	705,600	1,568,000	40,000	116,800	156,800	156,800	156,800	156,800	156,800	156,800	470,400
			2	25~26	870,650	712,350	1,583,000	40,000	118,300	158,300	158,300	158,300	158,300	158,300	158,300	474,900
			1	28	887,700	726,300	1,614,000	40,000	121,400	161,400	161,400	161,400	161,400	161,400	161,400	484,200
			2	20~21	842,600	689,400	1,532,000	40,000	113,200	153,200	153,200	153,200	153,200	153,200	153,200	459,600
114.8905A	103동	3호	1	5	865,150	707,850	1,573,000	50,000	107,300	157,300	157,300	157,300	157,300	157,300	157,300	471,900
			1	6	873,950	715,050	1,589,000	50,000	10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476,700
			3	7~9	883,300	722,700	1,606,000	50,000	110,600	160,600	160,600	160,600	160,600	160,600	160,600	481,800
			3	10~12	897,050	733,950	1,631,000	50,000	113,100	163,100	163,100	163,100	163,100	163,100	163,100	489,300
			3	13~15	906,400	741,600	1,648,000	50,000	114,800	164,800	164,800	164,800	164,800	164,800	164,800	494,400
			3	16~18	915,750	749,250	1,665,000	50,000	116,500	166,500	166,500	166,500	166,500	166,500	166,500	499,500
			3	19~21	924,550	756,450	1,681,000	50,000	118,100	168,100	168,100	168,100	168,100	168,100	168,100	504,300
			3	22~24	933,900	764,100	1,698,000	50,000	119,800	169,800	169,800	169,800	169,800	169,800	169,800	509,400
			3	25~27	943,250	771,750	1,715,000	50,000	121,500	171,500	171,500	171,500	171,500	171,500	171,500	514,500
			3	28~30	961,950	787,050	1,749,000	50,000	124,900	174,900	174,900	174,900	174,900	174,900	174,900	524,700
			3	31~33	970,750	794,250	1,765,000	50,000	126,500	176,500	176,500	176,500	176,500	176,500	176,500	529,500
			2	34,36	980,100	801,900	1,782,000	50,000	128,200	178,200	178,200	178,200	178,200	178,200	178,200	534,600
			1	37	989,450	809,550	1,799,000	50,000	129,900	179,900	179,900	179,900	179,900	179,900	179,900	539,700
		4호	1	5	865,150	707,850	1,573,000	50,000	107,300	157,300	157,300	157,300	157,300	157,300	157,300	471,900
			1	6	873,950	715,050	1,589,000	50,000	10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158,900	476,700
			3	7~9	883,300	722,700	1,606,000	50,000	110,600	160,600	160,600	160,600	160,600	160,600	160,600	481,800
			3	10~12	897,050	733,950	1,631,000	50,000	113,100	163,100	163,100	163,100	163,100	163,100	163,100	489,300
			3	13~15	906,400	741,600	1,648,000	50,000	114,800	164,800	164,800	164,800	164,800	164,800	164,800	494,400
			3	16~18	915,750	749,250	1,665,000	50,000	116,500	166,500	166,500	166,500	166,500	166,500	166,500	499,500
			3	19~21	924,550	756,450	1,681,000	50,000	118,100	168,100	168,100	168,100	168,100	168,100	168,100	504,300
			3	22~24	933,900	764,100	1,698,000	50,000	119,800	169,800	169,800	169,800	169,800	169,800	169,800	509,400
			3	25~27	943,250	771,750	1,715,000	50,000	121,500	171,500	171,500	171,500	171,500	171,500	171,500	514,500
			3	28~30	961,950	787,050	1,749,000	50,000	124,900	174,900	174,900	174,900	174,900	174,900	174,900	524,700
			3	31~33	970,750	794,250	1,765,000	50,000	126,500	176,500	176,500	176,500	176,500	176,500	176,500	529,500
			3	34~36	980,100	801,900	1,782,000	50,000	128,200	178,200	178,200	178,200	178,200	178,200	178,200	534,600
			1	37	989,450	809,550	1,799,000	50,000	129,900	179,900	179,900	179,900	179,900	179,900	179,900	539,700
	104동	3호	1	5	868,450	710,550	1,579,000	50,000	107,900	157,900	157,900	157,900	157,900	157,900	157,900	473,700
			1	6	877,250	717,750	1,595,000	50,000	109,500	159,500	159,500	159,500	159,500	159,500	159,500	478,500
			3	7~9	886,600	725,400	1,612,000	50,000	111,200	161,200	161,200	161,200	161,200	161,200	161,200	483,600
			3	10~12	895,950	733,050	1,629,000	50,000	112,900	162,900	162,900	162,900	162,900	162,900	162,900	488,700
			3	13~15	905,300	740,700	1,646,000	50,000	114,600	164,600	164,600	164,600	164,600	164,600	164,600	493,800
			3	16~18	914,650	748,350	1,663,000	50,000	116,300	166,300	166,300	166,300	166,300	166,300	166,300	498,900
			2	20~21	923,450	755,550	1,679,000	50,000	117,900	167,900	167,900	167,900	167,900	167,900	167,900	503,700
			3	22~24	932,800	763,200	1,696,000	50,000	119,600	169,600	169,600	169,600	169,600	169,600	169,600	508,800
			3	25~27	942,150	770,850	1,713,000	50,000	121,300	171,300	171,300	171,300	171,300	171,300	171,300	513,900
			3	28~30	960,850	786,150	1,747,000	50,000	124,700	174,700	174,700	174,700	174,700	174,700	174,700	524,100
			1	31	969,650	793,350	1,763,000	50,000	126,300	176,300	176,300	176,300	176,300	176,300	176,300	528,900
			2	34,36	979,000	801,000	1,780,000	50,000	128,000	178,000	178,000	178,000	178,000	178,000	178,000	534,000
			1	37	988,350	808,650	1,797,000	50,000	129,700	179,700	179,700	179,700	179,700	179,700	179,700	539,100
		4호	1	5	868,450	710,550	1,579,000	50,000	107,900	157,900	157,900	157,900	157,900	157,900	157,900	473,700
			1	6	877,250	717,750	1,595,000	50,000	109,500	159,500	159,500	159,500	159,500	159,500	159,500	478,500
			3	7~9	886,600	725,400	1,612,000	50,000	111,200	161,200	161,200	161,200	161,200	161,200	161,200	483,600
			3	10~12	895,950	733,050	1,629,000	50,000	112,900	162,900	162,900	162,900	162,900	162,900	162,900	488,700
			3	13~15	905,300	740,700	1,646,000	50,000	114,600	164,600	164,600	164,600	164,600	164,600	164,600	493,800
			3	16~18	914,650	748,350	1,663,000	50,000	116,300	166,300	166,300	166,300	166,300	166,300	166,300	498,900
			3	19~21	923,450	755,550	1,679,000	50,000	117,900	167,900	167,900	167,900	167,900	167,900	167,900	503,700
			3	22~24	932,800	763,200	1,696,000	50,000	119,600	169,600	169,600	169,600	169,600	169,600	169,600	508,800
			3	25~27	942,150	770,850	1,713,000	50,000	121,300	171,300	171,300	171,300	171,300	171,300	171,300	513,900
			3	28~30	960,850	786,150	1,747,000	50,000	124,700	174,700	174,700	174,700	174,700	174,700	174,700	524,100
			3	31~33	969,650	793,350	1,763,000	50,000	126,300	176,300	176,300	176,300	176,300	176,300	176,300	528,900
			3	34~36	979,000	801,000	1,780,000	50,000	128,000	178,000	178,000	178,000	178,000	178,000	178,000	534,000
			1	37	988,350	808,650	1,797,000	50,000	129,700	179,700	179,700	179,700	179,700	179,700	179,700	539,100
	101동	2호	1	5	859,650	703,350	1,563,000	50,000	106,300	156,300	156,300	156,300	156,300	156,300	156,300	468,900
			1	6	868,450	710,550	1,579,000	50,000	107,900	157,900	157,900	157,900	157,900	157,900	157,900	473,700
			3	7~9	877,800	718,200	1,596,000	50,000	109,600	159,600	159,600	159,600	159,600	159,600	159,600	478,800
			3	10~12	886,600	725,400	1,612,000	50,000	111,200	161,200	161,200	161,200	161,200	161,200	161,200	483,600
			3	13~15	895,950	733,050	1,629,000	50,000	112,900	162,900	162,900	162,900	162,900	162,900	162,900	488,700
			3	16~18	905,300	740,700	1,646,000	50,000	114,600	164,600	164,600	164,600	164,600	164,600	164,600	493,800
			3	19~21	914,100	747,900	1,662,000	50,000	116,200	166,200	166,200	166,200	166,200	166,200	166,200	498,600
			3	22~24	923,450	755,550	1,679,000	50,000	117,900	167,900	167,900	167,900	167,900	167,900	167,900	503,700
			3	25~27	932,800	763,200	1,696,000	50,000	119,600	169,600	169,600	169,600	169,600	169,600	169,600	508,800
			1	28	950,950	778,050	1,729,000	50,000	122,900	172,900	172,900	172,900	172,900	172,900	172,900	518,700
			2	34~35	969,100	792,900	1,762,000	50,000	126,200	176,200	176,200	176,200	176,200	176,200	176,200	528,600
			1	5	911,900	746,100	1,658,000	50,000	115,800	165,800	165,800	165,800	165,800	165,800	165,800	497,400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구분	신청 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자녀 3명이상이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하며,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자녀수에는 임신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됨)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미달 시 타 시 · 도에 배정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선정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제한이 적용되므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자는 신청이 불가함. ※ 무주택기간 산정 시 노부모(배우자가 있을 경우 배우자도 포함)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운용지침」관련 법령에 의함.	• 동일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 지역(서울특별시) 거주자가 우선함.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2호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함. (견본주택 내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석에 비치)

※ 당첨자 선정(공고) 유의사항
– 입주선정자는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입주선정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는 당첨자만 선정하며, 동 · 호수 배정업무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금융결제원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으로 배정함.(동 · 호 배정결과는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공고할 예정임)
※ 특별공급의 추첨순서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순으로 추첨함.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국토교통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비고
계	65			
미성년 자녀수(1)	5	미성년 자녀 4명 이상	5	자녀(임신중에 있는 태아, 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영유아 자녀수(2)	10	자녀 중 영유아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공급신청자가 만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공급신청자가 만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기간(5)	20	10년 이상	20	공급신청자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 ·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인천 · 경기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구분	신청 대상자	거주구분	신청 접수일	신청 방법	신청 장소
일반 공급	1순위	서울특별시	2017.7.5(수) 08:00 ~ 17:30	인터넷 청약 신청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모든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apt2you.com)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1순위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17.7.6(목) 08:00 ~ 17:30		
	2순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17.7.7(금) 08:00 ~ 17:30		

※ 1순위 일정분리에 따른 청약시 유의사항
– "해당지역(서울)" 거주자는 "해당지역(서울)" 접수일에만 청약가능하며, "기타지역" 접수일에는 청약 불가 (위반 시 부적격 처리)
– "해당지역(서울)"에 전입제한일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서울)" 거주자라 하더라도 전입제한일 이후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접수 (위반 시 부적격 처리)
※ 2순위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 ~ 17:30)
※ 국민은행(www.kbstar.com) 및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금융결제원(全 은행 청약자)	국민은행(국민은행 청약자)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APT청약신청」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특화서비스 「주택청약」 → 「인터넷청약」 →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파트투유(www.apt2you.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청약신청 안내"를 활용하시기 바람	

※ 상기 접수시간의 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자격(거주 개시일) 기재방법 : 거주개시일(KB국민은행 가입자만 해당)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초본으로 확인한 주택건설지역(시, 군 단위)의 전입일을 기재
※ 주택청약 참가은행(15개) : 기업, 국민, KEB하나, 수협, 농협, 우리, SC, 한국씨티,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신한은행

⦿ 노약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 청약 1순위 및 2순위 접수 방법 : 청약 접수 당일 아래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방문 청약 접수(청약접수 가능시간 09:00 ~16:00)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서(1순위, 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2순위에 한함)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 배우자 서명 • 본인확인증표(배우자 대리 신청시는 배우자의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1통 ※ 배우자 신청 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동일세대 구성 시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분리세대 구성 시 : 가족관계증명서 1통) [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Ⅴ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일정

구분	당첨자 발표	당첨자 및 동 · 호수 발표
특별공급	• 일시 : 2017.7.4(화) 17:00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게재 ※ 특별공급 청약신청 과열로 서류심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선정 및 공고시간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일시 : 2017.7.13(목) • 확인 : 금융결제원 홈페이지(개별조회) (www.apt2you.com,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당사홈페이지(www.yongsanhyosung.com)
일반공급	• 일시 : 2017.7.13(목) • 장소 : 당사 홈페이지 게재(예비 당첨자 포함)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apt2you.com)에서 당첨자 및 동 · 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성명, 생년월일 입력)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당첨자 및 동 · 호수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특별공급 동 · 호수 추첨은 금융결제원에서 일반공급분과 일괄 수행함에 따라 당사 견본주택에서 특별공급 당첨자의 동 · 호수 추첨은 별도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당첨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하여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 · 호수 배정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 체결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재당첨 제한 등이 적용됨)

(2) 가구 및 마감재 (단위 : 원, VAT 포함)

품목	주택형	판매가	비고
안방 슬라이딩장	92.7398A	2,100,000	
	92.9164B	2,500,000	
	92.1705C	2,500,000	
	102.8617	2,500,000	
	114.8905B	2,900,000	
식탁	선택1	6,100,000	라고
	선택2	10,200,000	카시나
	선택3	15,200,000	인피니
	선택4	7,600,000	몰테니
거실/주방바닥 마감재 변경(대리석)	92.7398A	4,700,000	
	92.9164B	4,800,000	
	92.1705C	4,800,000	
	102.8617	8,600,000	
	114.8905A	6,200,000	
	114.8905B	5,500,000	
	135.3849	9,400,000	
침실바닥 마감재 변경(조르다노)	92.7398A	3,900,000	
	92.9164B	3,700,000	
	92.1705C	3,700,000	
	102.8617	3,900,000	
	114.8905A	3,900,000	
	114.8905B	4,200,000	
	135.3849	5,300,000	

※ 유의사항
– 추가 선택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시 추가 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 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이상의 제품(타사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향후 별도 계약시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델과 다른 제품 및 금액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계약전 위치 확인 요망)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전시(일부)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제도 : 본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 주택이므로 해당 없음.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함
– 의무사항 적용여부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고기밀 창호	적용	기밀성창호설치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지하주차장 및 유도등
고효율 기자재	적용	급수가압펌프, 전열교환기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부대시설 공용화장실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적용 (거실, 침실, 안방 각 2회로)	실별 온도 조절기	적용	단위세대 각실 (안방, 침실, 거실)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단위세대 현관	절수 설비	적용	단위세대 욕실 (대변기, 수전류)

▣ 주택법 제39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6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 공동주택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	공동주택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
최우수등급	1등급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시공회사
상호	국제빌딩주변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주)효성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37 토투밸리 9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9
사업자등록번호	106–82–62163	114–85–13664

▣ 분양대행사 : 도우아이앤디(주)

▣ 견본주택 홈페이지 : http://www.yongsanhyosung.com

▣ 분양문의 : 02)794–1140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 또는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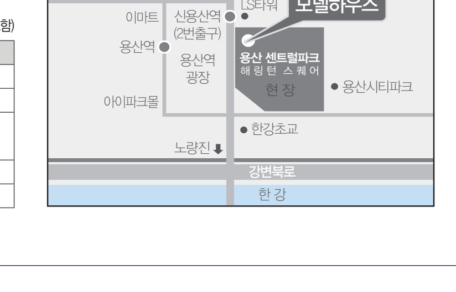

시행 국제빌딩주변제4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시공 효성

02.794.1140